H - 186 - 2016

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ㆍ 방지 지침

2016. 12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 :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찬석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(감염병 예방 조치 등), 제595조(유해성 등의 주지), 제601조(예방조치), 제602조(노출 후 관리)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 지침 (H-93-2015)
 - 의료기관 간호사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, 안전보건공단, 2012
 -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(2015-2019),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
 -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, 2013, 질병관리본부
 -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, 2014, 보건복지부
 - 2015 메르스(MERS) 대응 지침, 제 3-3판. 2015, 보건복지부.
 - 2015 메르스 백서, 2016, 보건복지부.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2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H - 186 - 2016

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· 방지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(감염병 예방 조치 등), 제595조 (유해성 등의 주지), 제601조(예방조치), 제602조(노출 후 관리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,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공기매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 범위

이 지침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(의료기관 제외)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잠복기"란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.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,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~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.
- (나) "공기매개 감염병"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사스),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AI)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.
- (다) "보호구" 란 공기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.

KOSHA GUIDE H - 186 - 2016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공기매개 감염병 위기 형태 및 경보 수준

- 4.1 해외 신종ㆍ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국 확산
 - (1)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공기매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 - (2)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공기매개 감염병 또는 사라진 공기매개감염병이 재출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- 4.2 공기매개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

위기경보 수준은 4가지로서 다음 <표 1>과 같다.

<표 1> 공기매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

수 준	내 용	비고
관심 (Blue)	○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○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	징후활동감시 대비 계획점검 질병관리본부 『신종 감염병 대책 반』선제적 구성 운영
주의 (Yellow)	○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※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○ 국내에서 신종·재출현 감염병 발생	협조체제가동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『중앙 방역대책본부』설치
경계 (Orange)	○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○ 국내 신종·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	대응체제가동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『중앙 방역대책본부』강화
심각 (Red)	○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○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○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	대응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『중앙 사고수습본부』설치 운영, 강화

H - 186 - 2016

5.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

5.1 보호구 지급

- (1)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 및 감염예방과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에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한다.
- (2) 주요 보호구는 마스크, 보안경, 장갑, 전신보호복 등이 있으며 사용방법 및 주의 사항은 <부록 1>를 참조

5.2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

- (1) 개인위생 관련 인프라 강화
- (가) 손셋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(비누 등)또는 손 소 독제,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 등 위생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직원들의 개 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. <부록 2 참조>
- (나)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.
- (다)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 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- (2) 직원 및 고객(방문객)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
- (가)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직원 및 고객(방문객)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 생 실천방안(손 씻기, 기침 에티켓 등)을 홍보한다.
- (나) 사업장, 영업소 등의 샤워실·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.

H - 186 - 2016

- (다)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.
- (3)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
 - (가)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"감염 예방수칙, 여행국가 환자 발생 상황, 해외에서의 주의사항, 귀국 후 유의사항 등"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.
- (나) 직원으로 하여금 입국 시,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설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,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.
- (다)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,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,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 발열모니터 링을 실시한다.
- (4) 대응 전담체계 사전 구축
- (가) 기업차원에서 대응·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한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.
- (나) 유행 확산시 주요 업무 지속을 위해 인력·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'업무지속계획'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여 만약의 상황에서도 기업 경영 지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한다.
- (5)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
- (가)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,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.
- (나)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(대체 근무조 편성, 대체근무지 지정, 근무시간 조정, 재택근무 등)하고, 감염자에 대한 보수·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마련한다.

H - 186 - 2016

5.3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

- (1)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, 비누와 물 또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는다.
- (2)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,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기를 피해야 한다. <부록 3 참조>
- (3)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하며,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.(주요 증상 및 최근 방문 지역을 진술)
- (4)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심증상의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.
- (5) 다른 지역으로 출장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, 의료기 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.

6.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와 대책 수립

- (1) 사업주는 신종감염병의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, 전파경로 차단 등 예방방법에 대한 정보.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실천한다.
- (2) 사업주는 신종감염병의 질병 발생 의심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의심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한다.
- (3) 사업주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, 정부의 조속한 원인규명과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입원 및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 활동에 협조한다.

7.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조치

(1) 해당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중 몸이 불편 하거나, 발열(37.8℃ 이상)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은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 하다.

H - 186 - 2016

- (2) 사업주는 일반 결근자의 결근 사유를 파악하여 결근 사유가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지 확인하고,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.
- (3) 사업주는 감염병 의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한다.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, 보건소 등에 신속하게 신고한다.
- (4)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 의심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.

8. 감염병 발생 작업부서 및 작업환경 조치

- (1)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
- (가)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(또는 근접접촉자)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.
- (나)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한다. 침구류,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- (2) 사업장 내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장비 및 시설을 청결히 세척
- (가) 환자가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거주한 장소 또는 사용한 장비를 깨끗이 닦아내고 사용한다.
- (나) 환자의 의류 및 침구류, 수건류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세탁하다.
- (3) 확진환자의 경우 거점병원을 통해 보건소에 신고 되므로 사업장에서 별도 신고 를 요하지는 않으나, 직원 가운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.

H - 186 - 2016

- (가) 사업장 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직원은 밀접접촉자(또는 근접접촉자)로 판단하고 노출일로부터 최대잠복기 경과를 관찰한다.
 - ① 공동기숙사 내 같은 방 사용 동거인
 - ② 증상이 있는 확진환자와 동일한 작업공간에 있던 근로자
- (나) 밀접접촉자로 판단되는 근로자는 자가 격리 중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.
 - ①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자가격리 통지서에 협조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한다.
 - ② 확진된 근로자는 자가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참고하여 자가격리와 치료에 협조한다.

H - 186 - 2016

<부록 1> 보호구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

①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

- O 개인보호구는 적절하게 착용되었을 때에만 감염을 막을 수 있음을 인지
- 개인보호구는 발생지역을 출입할 때(장소별 1회 사용, 재사용 금지)마다 교체
- O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
- O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이상의 보호구를 착용

② 개인보호구 규격

○ 직무별 또는 공기매개감염병 종류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규격 착용

③ 개인보호구 착용 군서

① 전신보호복 착용 → ② 덧신을 전신보호복 위로 착용 → ③ 호흡용 보호구 착용 →
 ④ 전신보호복 후드를 머리키락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씀 → ⑤ 고글 착용 → ⑥ 전신보호복 위로 장갑 착용

④ 개인보호구 탈의 군서

① 덧신 탈의 → ② 고글 탈의(얼굴 접촉 주의) → ③ 전신보호복 탈의(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안쪽을 바깥으로 말아서 탈의) → ④ 호흡용보호구 탈의(얼굴 접촉 주의) → ⑤
 장갑 탈의(손이 장갑의 겉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) → ⑥ 손 세정(물과 비누 또는 알콜 성분 손 세정제 사용)

장갑	 장갑을 낀 손으로 반대편 장갑의 외부를 잡고 벗긴다.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된 장갑을 잡는다. 장갑을 벗은 손의 손가락을 반대쪽 손목 부문에 넣는다. 안쪽이 밖으로 오도록 밀어내고 쥐고 있던 장 갑을 함께 감싸 적절하게 폐기한다. 	
보호복	 끈을 푼다. 목과 어깨에서 멀리 가운을 잡아당기고 오직 가운내부만 만지도록 한다. 오염된 바깥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말 아서 벗는다. 	
고글	• 앞면을 만지지 않고, 머리 또는 귀쪽 부분을 잡고 제거하여 적절히 처리한다.	
호흡용 보호구	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머리 뒤로 젖힌다. 안경을 착용 하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다른 손으로 마스크 쪽의 고무줄을 옆으로 벌려서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.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. 	

KOSHA GUIDE H - 186 - 2016

<부록 2> 올바른 손씻기 6단계



KOSHA GUIDE H - 186 - 2016

<부록 3> 기침시 유의사항

